- 2020년 본청 재무감사(5월)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 척 시

(기획감사실)

2020년 본청 재무감사(5월)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 치	비고
					내역	금액(원)		
계			10건	주의 6 시정 4		806,000		
1	▣	2019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시정	추징	20,000		
2	▣	2020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21,600		
3	◒	2018~ 2020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 미공개	주의				
4	◒	2018	일상경비 집행금액 초과	주의				
5	◒	2019~ 2020	지출결의서 서식 부적정	주의				
6	◩	2019	계약심사 미이행	주의				
7	◩	2018~ 2019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주의				
8	◩	2018~ 2019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시정	추징	210,000		
9	◩	2018~ 2020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시정	환수	554,400		
10	◩	2019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 대가지급 지연	주의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주	통계목	대금 청구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2건				10	30	20 (미소화)
2019.**.**	********* *** 내 ***** 파손에 따른 수선	㈜*** ***	201-01	*,***	10	15	5 (미소화)
2019.**.**	**** ***** 주변지역 ****** 홍보물품 제작	****	201-01	*,***	-	15	15 (미소화)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1]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u>신성장산업국(▣)</u>에서는 '▧ ◈ 내 ▩ 파손에 따른 수선' 등 2건 2,632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20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2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2019.7.26. 시행)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21,6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계	2건						21,600	
1	**** **** 업무협의	***	2020.**.**	춘천	**,***	**,***	10,800	교통비 과다
2	******* 운영위원회 참석	***	2020.**.**	춘천	**,***	**,***	10,800	교통비 과다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제4조, 제15조, 제16조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경로[2]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3]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숙박비 등의 지급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국내 여비 지급표[4]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5]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6]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7]

2)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3)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4) 2019.12.06.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으로 운임지급이 기존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
5)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지급
6)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7) 2019.7.1.부터 적용

따라서, ▣에서는 관외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공무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은 출장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급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그런데, <u>신성장산업국(▣)</u>에서는 '▧ ◇ 업무협의' 등 2건에 대해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일반요금의 시외버스가 다수 배차되어 있음에도 배차편수가 1일 3대에 불과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우등요금으로 교통비를 산정하여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21,600원을 환수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 미공개**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대장 미등록 및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계약일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계		10건			
1	2018.**.**	***·*** CCTV 임차 용역	**,***	'18.11.19~ '19.12.31	◈
2	2019.**.**	2019년 **(** 등) **** 위탁관리 용역	*,***	'19.1.10~12.31	◈
3	2019.**.**	2019년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19.1.10~12.31	◈
4	2019.**.**	2019년 **** **(** 및 **) CCTV 임차 용역	*,***	'19.1.10~12.31	◈
5	2019.**.**	2019년 ** 및 **** **** 위탁관리 용역	*,***	'19.1.1~12.31	◉
6	2019.**.**	2020년 **** **(** 및 **) CCTV 임차 용역	*,***	'20.1.1~12.31	◈

연번	계약일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7	2019.**.**	2020년 **** **(*** 및 ***) CCTV 임차 용역	**,***	'20.1.1~12.31	◈
8	2019.**.**	2020년 ***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20.1.1~12.31	◈
9	2019.**.**	2020년 **(** 등) **** 위탁관리 용역	*,***	'20.1.1~12.31	◈
10	2019.**.**	2020년 ** 및 **** **** 위탁관리 용역	*,***	'20.1.1~12.31	◉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의계약 내용[8]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5년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은 통신 또는 프로그램 장애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재정법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9] 제121조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 관리대장 또는 물품계약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행정국 회계과에서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8) 발주계획, 입찰공고의 내용, 개찰의 결과, 계약체결의 현황,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감리.감독.검사의 현황, 대가의 지급현황
9)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05.01. 전부개정)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계약대장을 통해 기록·관리되는 계약정보를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자동으로 연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발주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계약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수의계약 내용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u>자치행정국(◒)</u>에서는 '◘·◩ CCTV 임차 용역' 등 10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정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대장에 등록하지 않았으며, 이에 계약정보공개시스템과 자료연계가 되지 않아 수의계약 내역 등 계약정보를 미공개하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시 계약정보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계약대장에 등록하여 계약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일상경비 집행금액 초과**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일상경비 집행금액 위반 현황

품의일자	지급일자	집행내용	지출과목	채권자	집행금액 (천원)	지급명령 번호
계					7,425	
2018.**.**	2018.**.**	**** 제작 및 구입	201-01	****	4,950	879
2018.**.**	2018.**.**	**** 제작 및 구입	201-01	****	2,475	880

2. 내 용

「지방회계법」 제3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 등을 그 성질상 현금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4조제3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현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지출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10] 제23조에 따르면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하며, 다만 일상경비로 교부받은 경비로 지급하는 것 중 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 1건당 500만원 미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11]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지출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행정국(◒)에서는 '◔ 제작 및 구입' 2건 7,425천원을 집행하면서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통합발주하여 회계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고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지출하여야 함에도, 일상경비로 집행하기 위해 500만원 미만으로 2번에 나눠서 집행하여 재무회계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500만원 이상 집행 시 회계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여 일상경비로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10)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05.01. 전부개정)
1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 ~ 2020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지출결의서 서식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출결의서 서식 부적정 현황

연번	지출일자	집행내용	지출금액 (천원)	품의 유형	결제방법	증빙구분	적정 유형
계							
1	2019.**.**	** **** **** 현수막 제작	*,***	일반	계좌이체	전자 세금계산서	물품 구입
2	2019.**.**	제25회 ****** **** 현수막 제작	*,***	일반	계좌이체	전자 세금계산서	물품 구입
3	2020.**.**	* **** **** 현수막 제작	*,***	일반	계좌이체	전자 세금계산서	물품 구입
4	2020.**.**	2020 ******** 현수막 및 초청장 제작	*,***	일반	계좌이체	전자 세금계산서	물품 구입
5	2020.**.**	2020 ******** 자료 제본	*,***	일반	계좌이체	전자 세금계산서	물품 구입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관계직원은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12] 제121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및 공사·용역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13]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14]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u>자치행정국(◒)</u>에서는 '2019년 ◤ ◧ 현수막 제작' 등 5건 12,932천원의 물품을 제작·구입하면서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를 사용하지 않고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입(물품·기타)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 지출함으로써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

12)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시행 2020.05.01. 전부개정)
1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14)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2020.5.1.)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물품구매 시 구입과 지출결의서를 사용하고 채권자 영수인 날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계약심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계약심사 미이행 현황

건 명	계약일자	공사금액(천원)			계약구분	비 고
		계	도급예정액	관급자재대		
******(***) ****공사	2019.**.**.	348,207	191,100	157,107	공사	심사대상 (3억이상)

2.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해당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심사 운영요령에 따라 그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추정금액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 계약심사의 대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표] 계약심사 대상사업

구 분	공 사	용 역	물품 제조·구매
원가심사 (추정금액)	종합공사 3억원 이상 전문공사 2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 설계변경 심사 :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전문·기타공사 2억원 이상)의 설계변경 누계금액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그런데, **경제건설국(◩)**에서는 '◒(△) ▤공사'를 추진하면서 관급자재대를 포함하여 총공사비 추정금액이 3억원 이상으로 계약심사 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계약심사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부서에서 자체 원가심사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약심사 절차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감사부서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 심사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 현황

연번	지급일	집행내용	인원	내역	금액(원)	지출과목	적 정 지출과목
계	계	3건			572,000		
1	2018.**.**	*** **** 관계자 협의회 참여자 만찬	24명	소속 공무원	192,000	사무관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	2019.**.**	2019년 **** **** 워킹그룹 회의 개최 오찬	12명	관계 공무원	180,000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	2019.**.**	*** **** 관계자 협의회 참여자 만찬	25명	소속 공무원	200,000	사무관리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 내 용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 및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 예

산편성기준 및 예산의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6조에서 정한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임차료 등으로 분류하며, 급량비는 기본업무 수행 및 현안 업무추진을 위한 특근매식비, 각종 훈련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야간근무자 및 휴일근무자 급식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15]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부서 전체 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로 사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전안전부령) 제3조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행안부에서 작성한 해설집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집행 시 예산편성목적에 부합되는지 여부와 경비의 집행성격이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인지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집행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세출예산 집행 시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성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예산편성 집행기준에 부합하게 예산을 집행했어야 했다.

그런데, <u>경제건설국(◩)</u>에서는 '◧ ◫ 관계자 협의회 참여자 만찬' 등 3건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회의 후 만찬을 특근매식 경비인 사무관리비로 지출하였고, 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개최 후 실시한 오찬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아닌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인 부서운영업무

15)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추진비로 집행함으로써 세출예산집행기준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예산편성 목적과 집행기준에 맞게 세출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210,000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미소화**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주	통계목	대금 청구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2건				-	210	210 (미소화)
2018.**.**	*** *** ****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5개월)	○(주)	201-02	*,***	-	110	110 (미소화)
2019.**.**	*** *** ****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5개월)	○(주)	201-02	*,***	-	100	100 (미소화)

2.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16]의 2.5/100,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u>경제건설국(◩)</u>에서는 '◈ ▧ 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2건 ◉천원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210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210,000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2019.7.26. 시행)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8 ~ 2020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554,400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가.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계	7건						369,400	
1	**-** ****** ****심의 사전협의	***	2018.**.**	춘천	**,***	**,***	44,000	공용차량 사용
2	** ****** 협의 참석	***	2018.**.**	춘천	**,***	**,***	44,000	공용차량 사용
3	2019년도 ******** 시군 관계자 회의 참석	***	2018.**.**	춘천	**,***	**,***	44,000	공용차량 사용
		***	2018.**.**	춘천	**,***	**,***	44,000	
4	******* **** 참고인 조사	***	2019.**.**	강릉	**,***	-	52,000	공가사유
		***	2019.**.**	강릉	**,***	-	52,000	
5	**** **** **** 처리기준 개정 설명회 참석	***	2019.**.**	춘천	**,***	**,***	57,000	공용차량 사용
6	2020년도 ****** ******(안) 심의	***	2019.**.**	춘천	**,***	**,***	10,800	교통비 과다

연번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지	지급액	정당 수령액	초과 수령액	비 고
7	** **** 보고 및 *** ** 방안 마련	***	2019.**.**	춘천	**,***	**,***	10,800	교통비 과다
8	*** ** *****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추진상황 보고회 참석	***	2019.**.**	춘천	**,***	**,***	10,800	교통비 과다

나.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초과지급 현황

(단위 : 원)

연 도	건수	출장지	공용차량	지급금액	초과지급금액
2018~2020년	19건	관내	사용	325,000	185,000

※ 세부내역 붙임 참조

2. 내 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공무원 여비 규정」 제2조, 제4조, 제15조, 제16조 및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4조에 따르면 여비는 운임·일비·숙박비·식비 등으로 구분하며, 일반적인 경로[17] 및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고, 관용(官用)의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 등을 이용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18]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숙박비 등의 지급은 아래 표와 같다.

17) 육로 여행시 : 기차 또는 고속버스(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 육지~도서간 여행시 : 항공기 또는 선박
18) 공용차량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표] 국내 여비 지급표[19]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버스)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20]	20,000	실비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 50,000)	20,000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2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숙박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고속(또는 시외버스)·비행기·선박의 승차권 등 [22]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무에 관하여 국회, 법원, 검찰, 그 밖의 기관에 소환될 때는 공가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건설국(◪)에서는 관외출장여비 지급 시 출장공무원에게 숙박비, 교통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회계관계 공무원은 출장여비가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급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했다.

19) 2019.12.06.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으로 운임지급이 기존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
20)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지급
21)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22) 2019.7.1.부터 적용

그런데, 경제건설국(◩)에서는 '◒ 협의 참석' 등 4건에 대해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 추진을 위해 예산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을 이용하여 관외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교통비와 일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였으며, '◩ ◉ 참고인 조사' 1건은 공가사유에 해당하여 출장여비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관외출장명령을 승인하고 출장여비를 지급하였고, '2020년도 ◈ ◔(안) 심의' 등 3건은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일반요금의 시외버스가 다수 배차되어 있음에도 배차편수가 1일 3대에 불과하고 실제 이용하지 않은 우등요금으로 교통비를 산정하여 출장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다.

나. 공용차량 사용에 따른 관내출장여비 초과지급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에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건설국(◩)에서는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을 위해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자는 관내출장 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 시 공용차량 사용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장비 감액 등 지급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런데, 경제건설국(◩)에서는 19건 325천원의 근무지내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출장여비 지급 시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출장비를 정당액보다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554,400원을 환수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 행 년 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시간외근무자 특근매식비 대가지급 지연**

【위법·부당내용】

1. 현 황

○ 2019년 시간외근무자 급식비 지출 현황

적 요	급식제공 결의(명/천원)			현금영수증 매출전표일 (전표시간대)	급식비 지출 현황(명/천원)				정상지급 월 대비 지연지급
	인원	금액	일자		인원	금액	지출일	채주명	
총 6회			6회					14인	
4월분 급식비	***	*,***	'19.4.1.	2019.11.18. (19:40~20:27)	***	***	2019. 11.22.	*외 2인	6개월 지연지급
5월분 급식비	***	*,***	'19.5.2.	2019.11.18. (19:40~20:10)	***	***	2019. 11.21.	"	5개월 지연지급
6월분 급식비	***	*,***	'19.6.2.	2019.11.18. (19:51~20:10)	***	***		*외 1인	4개월 지연지급
7월분 급식비	***	*,***	'19.7.1.	2019.11.18. (19:52~20:10)	**	***	2019. 11.22.		3개월 지연지급
8월분 급식비	***	*,***	'19.8.1.	2019.11.18. (19:53~20:11)	***	***			2개월 지연지급
9월분 급식비	***	*,***	'19.9.2.	2019.11.18. (19:53~20:11)	**	***			1개월 지연지급

2. 내 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23] 제Ⅱ장.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도별 재정 신속집행 계획에 따라 예산의 신속집행을 추진하며,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대가(금)지급 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고,

제Ⅲ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 1인당 1식 급식을 제공 할 수 있으며,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계약상대자가 대금 미청구시에는 먼저 계약상대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대금을 청구할 것을 통지하는 등 대금 청구 독려조치 등을 취하여 재정부담이 된 시간외근무자들에게 제공한 6개월분의 특근매식비 4,724천원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u>경제건설국(◩)</u>에서는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청구 독려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위 현황과 같이 ◩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자에게 제공한 특근매식비를 급식을 제공코자 품의한 기간의 해당월이(2019.4월분～9월분) 종료된 지 최소 1개월에서 최장 6개월이 지나서 2019.11.21. ~ 2019.11.22.일(2일간)에 걸쳐 일괄 지급하는 등 대금을 지연 지급한 사실이 있다.

23)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 훈령, 시행 2020.5.1.)

【처 분 요 구】

○ 시간외근무자에 대한 특근매식비 지출 시 급식내역에 대한 검사 완료 후 대가를 신속히 지급하여 지연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